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0. 3. 12(목) 10:00

제2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64호
- 나. 제 출 자 : 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2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3. 2.

2. 제안이유

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를 위해 이용료 징수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 및 별표)
- 나.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강료 면제 규정 신설(안 제7조의3)
- 다.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이용료 반환 규정 신설(안 제7조의4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
- (2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제6항
- (3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4항
- (4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21조
- (5)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별표4
- (6) 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(7) 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개정 배경

본 개정조례안은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주민에게 주민에게 이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며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7조의2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며, 강의실 등의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유료 대관 원칙을 적용하는 신설 안이며,
- 안 제7조의3에서는 이용료의 감면 조항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및 실업 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이용을 위한 접근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이용료의 감면조항을 마련하였으며
- 안 제7조의4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는 신설 규정임.

나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탁 시설의 이용료 징수는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해당 조항들을 각각 신설하는 안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관계법령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.20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.20.>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신설 2010.2.4., 2015.1.20.>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<신설 2010.2.4., 2015.1.20.>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., 2015.1.20.>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., 2015.1.20.>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2.4., 2015.1.20.>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08.12.26.]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21조(수탁재산의 위탁료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7.20.>

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. <신설 2015.7.20., 2016.7.12., 2017.7.26.>

1. 수입

가.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, 이용료 등

나.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·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(轉貸)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

다.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·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

2. 지출

가.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,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

나.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,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. <신설 2015.7.20.>

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 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,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. <개정 2010.8.4., 2013.6.21., 2015.7.20., 2016.7.12.>

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4., 2013.6.21., 2015.7.20.>

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3.6.21., 2014.11.19., 2015.7.20., 2017.7.26.>

[전문개정 2009.4.24.]

[제목개정 2015.7.20.]